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6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년 6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0. 6. 15)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 제안이유

- 승용차부제에 관한 근거 규정의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

(안 제2조·제4조 및 제6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 제36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 제37조

나. 정의 규정에 승용차요일제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추가 규정함(안 제2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가.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출입을 금지하는 것

을 말한다.

나.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 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라. “승용차요일제”란 월·화·수·목·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입·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마.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중 3급지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바. “승용차함께타기”란 출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입·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사.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

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자.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차.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500미터 이내의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통근버스공동운영”, “승용차함께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카. “자전거이용활성화”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영제17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7조제1항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단위부담금의 조정등)”을 “(단위부담금의 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제19조제2항 및 영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00제곱미터이상인”을 “2천제곱미터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00제곱미터미만인”을 “2천제곱미터 미만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을 “2천제곱미터 이상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를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2·5·10부제”를 “2부·5부·10부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통근관리인 선임등)”을 “(통근관리인 선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각호의 범위 안에서”를 “각 호의 범위에서”로 하며, 단서규정의 “3회이상”을 “3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5·10부제”를 “2부·5부·10부제”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00면미만인”을 “100면 미만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00면이상인”을 “100면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정오(12시)이후”를 “정오(12시) 이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2·5·10부제”를 “2부·5부·10부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제13조 중 “이행 계획서”를 “이행계획서”로 하고, “의하여”을 “따라”로 한다.

별표 1·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프로그램	이행기준	경감비율
승용차 10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입·출입 금지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	○ 10부제 기준과 병행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입·출입 금지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 다만,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2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에 승용차 진입·출입 금지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 다만, 5부·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요일제	○ 요일제 전자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요일에 승용차의 진입·출입 금지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 다만, 5부·10부제 경감비율을 합산하지 않음
주차장 유료화	○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규정한 공영노외주차장 중 3급지 이상 주차요금 징수 ※ 다만, 기업체·단체 등의 소유 차량 제외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승용차 함께타기	○ 출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입·출입하는 것	○ 전체소속직원 소유 승용차 대수 중 참여대수의 비율에 따라 - 100분의 10 이상~100분의 20 미만 : 100분의 2 - 100분의 30 미만: 100분의 5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10
시차출근제	○ 09:00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 출근시간 조정 ○ 다만, 오전 06:00 이전 또는 정오(12:00) 이후 교대근무하는 종사자는 제외	○ 1시간 차이 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프로그램	이행기준	경감비율
통근버스 운영	○ 기업체 소유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 제공	○ 출·퇴근 운영시: $\{(총좌석수 \div 총종사자수) \div 2\} \times 100$ 의 비율 ○ 출근 또는 퇴근만 운영시: $\{(총좌석수 \div 총종사자수) \div 4\} \times 100$ 의 비율(경감을 최대 30퍼센트 이내)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	○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매월 3만원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등 제공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자전거이용 활성화	○ 소속 종사자 100분의 10이상이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 소속 종사자 100분의 20이상이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별표 2]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

□ 승용차함께 타기

교통수단을 제공한 당해 기업체	참여한 기업체
<p>○ 해당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1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2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3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4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명 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5퍼센트 	<p>○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1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2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3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4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명 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5퍼센트

□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p>○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이용시: 1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시: 2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시: 3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4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이용시: 5퍼센트 	<p>○ 시설물의 종사자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시: 1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시: 2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 3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이용시: 4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60명 이상 이용시: 5퍼센트

[별지 제2호서식]

<input type="checkbox"/> 선 임 통근관리인 <input type="checkbox"/> 해 임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 경				
시 설 개 요	명 칭		면 적(m ²)	
	주 소		대 표 자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종사자)	
선 임 · 해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전화 번호	
변 경 자	직 위		선임· 해임 일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전화 번호	
	직 위		변경 일자	
「부천시 교통유발부담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귀하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				
시 설 개 요	명칭			면적(m ²)
	주소			대표자
	주차장규모	총 대	평면주차장 지하주차장 기계식주차장	대 대 대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종사자)
경 감 결 정 사 항	구분		신청사항	결정사항
	경감비율(총계)		퍼센트	퍼센트
	승용차10부제		퍼센트	퍼센트
	승용차5부제		퍼센트	퍼센트
	승용차2부제		퍼센트	퍼센트
	승용차요일제		퍼센트	퍼센트
	주차장유료화		퍼센트	퍼센트
	승용차함께타기		퍼센트	퍼센트
	시차출근제		퍼센트	퍼센트
	통근버스운영		퍼센트	퍼센트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퍼센트	퍼센트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퍼센트	퍼센트
	자전거이용활성화		퍼센트	퍼센트
	<p>「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부 천 시 장(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 하</p>			

210

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미 이행실태 확인 통보서

구 분	기업체 이행계획서	미이행 프로그램	미이행 내용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년 월 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귀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같이 시행하지 아니하였기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기업체 대표 ○ ○ ○ 귀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97호
의결 년월일	2010. 6. 18 (제161회)

제출년월일 : 2010. 6.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승용차부제에 관한 근거 규정의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한편,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 하여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안 제2조·제4조 및 제6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 제36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 제37조
- 나. 정의 규정에 승용차요일제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추가 규정함(안 제2조).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가.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출입을 금지하는 것

을 말한다.

나.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 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라. “승용차요일제”란 월·화·수·목·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입·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마.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중 3급지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바. “승용차함께타기”란 출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입·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사.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자.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차.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500미터 이내의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통근버스공동운영”, “승용차함께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카. "자전거이용활성화"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영제17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7조제1항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단위부담금의 조정등)”을 “(단위부담금의 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제19조제2항 및 영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제37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00제곱미터이상인”을 “2천제곱미터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00제곱미터미만인”을 “2천제곱미터 미만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을 “2천제곱미터 이상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를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2·5·10부제”를 “2부·5부·10부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통근관리인 선임등)”을 “(통근관리인 선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각호의 범위 안에서”를 “각 호의 범위에서”로 하며, 단서규정의 “3회이상”을 “3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5·10부제”를 “2부·5부·10부제”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00면미만인”을 “100면 미만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00면이상인”을 “100면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정오(12시)이후”를 “정오(12시) 이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2·5·10부제”를 “2부·5부·10부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한

다.

제13조 중 “이행 계획서”를 “이행계획서”로 하고, “의하여”을 “따라”로 한다.

별표 1·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프로그램	이행기준	경감비율
승용차 10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입·출입 금지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	○ 10부제 기준과 병행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입·출입 금지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 다만,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2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에 승용차 진입·출입 금지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 다만, 5부·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요일제	○ 요일제 전자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요일에 승용차의 진입·출입 금지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 다만, 5부·10부제 경감비율을 합산하지 않음
주차장 유료화	○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규정한 공영노외주차장 중 3급지 이상 주차요금 징수 ※ 다만, 기업체·단체 등의 소유 차량 제외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승용차 함께타기	○ 출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입·출입하는 것	○ 전체소속직원 소유 승용차 대수 중 참여대수의 비율에 따라 - 100분의 10 이상~100분의 20 미만 : 100분의 2 - 100분의 30 미만 : 100분의 5 - 100분의 30 이상 : 100분의 10
시차출근제	○ 09:00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 출근시간 조정 ○ 다만, 오전 06:00 이전 또는 정오(12:00) 이후 교대근무하는 종사자는 제외	○ 1시간 차이 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프로그램	이행기준	경감비율
통근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 소유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퇴근 운영시: $\{(총좌석수 \div 총종사자수) \div 2\} \times 100$의 비율 ○ 출근 또는 퇴근만 운영시: $\{(총좌석수 \div 총종사자수) \div 4\} \times 100$의 비율(경감을 최대 30퍼센트 이내)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매월 3만원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자전거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종사자 100분의 10이상이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종사자 100분의 20이상이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별표 2]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

□ 승용차함께 타기

교통수단을 제공한 당해 기업체	참여한 기업체
<p>○ 해당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1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2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3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4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명 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5퍼센트 	<p>○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1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2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3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4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명 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5퍼센트

□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p>○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이용시: 1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시: 2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시: 3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4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이용시: 5퍼센트 	<p>○ 시설물의 종사자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시: 1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시: 2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 3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이용시: 4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60명 이상 이용시: 5퍼센트

[별지 제2호서식]

<input type="checkbox"/> 선 임 통근관리인 <input type="checkbox"/> 해 임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 경				
시 설 개 요	명 칭		면 적(m ²)	
	주 소		대 표 자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종사자)	
선 임 · 해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전화 번호	
변 경 자	직 위		선임· 해임 일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전화 번호	
	직 위		변경 일자	
「부천시 교통유발부담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귀하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미 이행실태 확인 통보서

구 분	기업체 이행계획서	미이행 프로그램	미이행 내용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년 월 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귀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같이 시행하지 아니하였기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기업체 대표 ○ ○ ○ 귀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호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8호·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부담금"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p> <p>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부담금”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p> <p>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p> <p>②"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라 함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p> <p>1. "승용차 10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p> <p>2. "승용차 5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 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p>	<p>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p> <p>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p> <p>가.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p> <p>나.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3. "승용차 2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p> <p>4.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규정한 공영노외주차장중 3급지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p> <p>5. "승용차 함께타기"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p> <p>6.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이상이 1시간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	<p>다.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p> <p>라. "승용차요일제"란 월·화·수·목·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입·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p> <p>마.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중 3급지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p> <p>바. "승용차함께타기"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입·출입하는 것을 말한다.</p> <p>사.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

현행	개정안
<p>7.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p>	<p>아.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p>
<p>8.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50%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p>	<p>자.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p>
<p>9.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500미터이내의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영", "승용차 함께타기"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p>	<p>차.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500미터 이내의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통근버스공동운영", "승용차함께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 (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p>	<p>카. "자전거이용활성화"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보관소 등을 설치·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 제1항제18호에 따른 ----- -----.</p> <p>1. ~ 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단위부담금의 조정등)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p> <p>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p> <p>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p> <p>3. (생략)</p>	<p>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p> <p>각 호 -----.</p> <p>1. -----2천제곱미터 이상인-----</p> <p>-----</p> <p>2. ----- 2천제곱미터 미만인-----</p> <p>-----</p> <p>3. (현행과 같음)</p>
<p>제5조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5조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p> <p>에 따라 -----</p> <p>-----</p> <p>----- 2천제곱미터 이상인-----.</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 ①영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을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p>	<p>제6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 ① -----</p> <p>에 따른 -----</p> <p>-----법 제37조에 따른-----</p> <p>-----.</p>

현행	개정안
<p>제9조 (통근관리인 선임등) ① (생략)</p> <p>②통근관리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u>7일이내</u>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통근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근관리인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p>	<p>제9조(통근관리인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u>7일 이내</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제10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u>3회이상</u>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u>2·5·10부제</u></p> <p>가. 주차면수가 <u>100면미만인</u>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p> <p>나. 주차면수가 <u>100면이상인</u>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p> <p>2. (생략)</p> <p>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u>5일이내</u> 운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에 따라 -----</p> <p>-----<u>각 호의 범위에서</u>-----</p> <p>-----<u>3회 이상</u>-----</p> <p>1. -----<u>2부·5부·10부제</u></p> <p>가. -----<u>100면 미만인</u> -----</p> <p>-----</p> <p>나. -----<u>100면 이상인</u> -----</p> <p>-----</p> <p>2. (현행과 같음)</p> <p>3. -----<u>5일 이내</u>-----</p> <p>-----</p>

현행	개정안
<p>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 2. (생략)</p> <p>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이 승용차의 <u>진·출입을 하는 경우</u></p> <p>4. (생략)</p> <p>5. 제2조제2항제7호의 <u>규정에 의하여</u>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오전6시 이전 출근자 및 <u>정오(12시)이후</u>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6.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u>2·5·10부제</u>를 적용 받지 않는다.</p>	<p>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 예외) -----</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4. (현행과 같음)</p> <p>5. ----- <u>에 따라</u>-----</p> <p>-----<u>정오(12시)</u></p> <p><u>이후</u>-----</p> <p>-----.</p> <p>6. -----</p> <p>-----<u>2부·5부·10부제</u>-----</p> <p>-----.</p>
<p>제12조 (부담금경감신청 등) ①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u>의한</u>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u>의하여</u> 접수한 부담금경감신청 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u>의한</u> 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u>7일</u>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2조 (부담금경감신청 등) ① -</p> <p>-----</p> <p>-----<u>따른</u>-----</p> <p>-----.</p> <p>② -----<u>에 따라</u>-----</p> <p>-----</p> <p>-----</p> <p>-----<u>따른</u>-----</p> <p>-----<u>7일</u> 이내</p> <p>-----.</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 (미이행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가 <u>이행 계획서</u>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u>의하여</u>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3조 (미이행시 조치사항) ----- ----- <u>이행계획서</u>----- ----- ----- ----- -----<u>따라</u> ----- ----- -----<u>.</u></p>